

선 람	기 관 의 장

제961호 2017. 3. 24.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09호 분할개시결정 공고 ----- 5
- 삼척시 공고 제210호 분할조서 의결 공고 ----- 6
- 삼척시 공고 제216호 삼척시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
- 삼척시 공고 제219호 삼척시 빈집정비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
- 삼척시 공고 제221호 삼척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18
- 삼척시 공고 제228호 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 27
- 삼척시 도계읍 공고 제3호 도로의 지정·공고 ----- 28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7 - 2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 03. 24.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월계안1길 1-12(교동) 의1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03.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
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교동 697-14	강원도 삼척시 월계안1길 1-12(교동)	20170324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활용(월계안길 분기)	
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대전리 30-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대전길 13	20170324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 사용	
3		이	하	여	백		
4							
5							
6							
7							
8							
9							
10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주소	계	주소	2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교동 697-14		강원도 삼척시 월계안1길 1-12(교동)		20170324	건물신축	20090626	도로명 부여사유	일련번호방식활용(월계안길분기)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대전리 30-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대전길 13		20170324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 사용	

삼척시공고 제2017-209호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4호서식)

분할개시결정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1. 공고 기간: 2017. 3. 20 ~ 2017. 4. 9.
- 2. 공고 내용: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동의인
삼척시	원덕	길남	이	대	161	이*기 외 1	60.*.**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	이*기 외 1
					129	심*술 외 1	49.*.**	강원도 강릉시 원대산로 13-6, ***	심*술 외 1
					248	김*찬 외 1	45.*.**	강원도 삼척시 교통동 ***	김*찬 외 1

삼척시

 2017년 3월 20일

297mm×210mm | 복사지 80g/m²

삼척시공고 제2017-210호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24호서식)

분할조서 의결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조서 의결이 있어 분할조서의 내용에 따라 분할하게 되니 이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분할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1. 공고 기간: 2017. 3. 20. ~ 2017. 4. 2.
- 2. 공고 내용: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분할 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동의인			
삼척시	원덕	길남	88	대	271	2	남*녀 외 1	3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길 **남*녀 외 1	남*녀 외 1			
											하	여	백

삼척시

 2017년 3월 20일

삼척시 공고 제2017-216호

「삼척시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일
삼척시장

삼척시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라 법률 개정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게 삼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제3조)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삼척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 전 화 : 033 - 570 - 3342 - 팩 스 : 033 - 570 - 3138

4.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 부분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부.
-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석평가서 등의 보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강원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 대상 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삼척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 제4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삼척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설치된 삼척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 및 실·과장
 -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가.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전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6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 ▣ 의견제출자 :

조 례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 2017 - 219호

「삼척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삼척시장

삼척시 빈집정비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현 빈집정비 지원조례는 빈집 철거지원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에 빈집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이 지원 가능토록 함.
- 나. 빈집정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실시
- 다.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빈집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2. 주요내용

- 가. 정의 추가(안 제2조)
 - “빈집”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
 -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 시장은 빈집정비업무의 추진을 위한 체제구축 및 예산확보 노력
- 빈집정비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빈집실태조사의 실시

다. 지원 대상 및 빈집의 활용 (안 제5조, 제6조)

- 빈집을 수선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3년이상 임대 동의시 지원
-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의 사무소등으로 이용할 경우 삼척시가 무상으로 3년 이상 활용하는 것을 소유자 동의 후 수리 또는 리모델링 지원

라.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1조)

-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3. 의견제출

삼척시 빈집정비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삼척시장(건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삼척시청 건축과

▪ 주 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건축과

▪ 전 화 : (033) 570-3473 ▪ FAX : (033) 570-3146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화, 직접방문 등

4. 참고사항

○ 붙임 문서

- 삼척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1부
- 의견 제출서 1부.

○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방지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등에 관한 사항
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철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그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임대할 것을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빈집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빈집의 활용) ① 시장은 빈집 소유자로부터 3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이용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그 빈집의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확인요청) 시장은 빈집의 소유자가 사망·이주 등의 사유가 있고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을 위하여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세 과세자료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제11조(빈집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원된 빈집 정비는 모두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 의견제출자 :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17-221호

삼척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삼척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2일

삼 척 시 장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와 관련된 용어 정리(안 제2조)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관계 공공기관 및 단체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삼척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총무과(전화 033-570-3238, 팩스 033-570-3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다.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장(총무과장)
- 우편번호 : 25914

삼척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하고 삼척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지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조 례 명 : 「삼척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 의견서	
	수정안	검토사유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함.

나. 추계결과

- 향후 5년간 총 소요예산 : **205,000천원**
- 연도별 소요예산 현황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비** : 150,000천원(시비)
산출내역 : 30,000천원 × 5년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운영비** : 50,000천원(시비)
산출내역 : 10,000천원(시비) × 5년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운영비** : 5,000천원(민간)
산출내역 : 1,000천원 × 5년

다. 재원조달 방안

- 의존재원(보조금=국비)
- 자체수입(지방세=도비·시비)
- 민간자본(민간부담금=민간)

3. 작성자

작성자	총무과장 이 정 수
연락처	(033) 570-32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205,000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운영비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55,000
재원 조달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205,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지방세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계						

관계 법령문 발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들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조금)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위탁기관(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 법인에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삼척시 공고 제2017-228호

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삼척시공인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2일

삼척시장

- 등록 사유 : 2017. 3. 22. 인증기 교체로 인한 재등록
- 등록 연월일 : 2017. 3. 22.
-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인명	규격	인영	등록사유	비고
재등록 공인	노곡면장인 (민원실인증기전용)	2.7cm * 2.7cm (정방형)		인증기교체로 인한 재등록	
폐기 공인	노곡면장인 (민원실인증기전용)	2.7cm * 2.7cm (정방형)			
재등록 공인	노곡면장인 (마음중계소인증기전용)	2.7cm * 2.7cm (정방형)			
폐기 공인	노곡면장인 (마음중계소인증기전용)	2.7cm * 2.7cm (정방형)			

삼척시 도계읍 공고 제2017-3호

도로의 지정·공고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 산43번지의 1필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용도의 건축물 신축에 따른 건축신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3월 21일

삼척시장

- 도로의 위치 :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 산43번지
- 도로의 현황 : 길이 : 162m, 너비 : 3.85m, 면적 : 624㎡
-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변경 전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공부상 면적	지정 면적	
합계			22,291	624	
도계읍 황조리	산43	일	22,291	624	주식회사 에이치이씨홀딩스

